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2-02-04

인 천 지 방 법 원

제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1구합52611 취득세등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redacted]

담당변호사 [redacted]

피 고 [redacted]광역시 [redacted]청장

변 론 종 결 2021. 11. 19.

판 결 선 고 2021. 12. 10.

주 문

1. 피고가 2020. 9. 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기재 취득세 합계 54,083,180원, 지방교육세 합계 5,408,300원, 농어촌특별세 합계 27,900원에 대한 각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2-02-04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redacted]공사 사이의 토지 매매계약 체결

원고는 2017. 1. 3. [redacted]공사로부터 [redacted]구 B 64,40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144,258,240,000원에 매수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원고와 [redacted]공사는 매매대금 중 117,813,184,000원은 2017. 1. 3.부터 2021. 1. 3.까지 사이에 분할하여 지급하고, 나머지 26,445,056,000원은 [redacted]공사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과 상계하기로 약정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대금지급 약정 내용과 실제 대금 지급시기, 액수 등은 아래 표 1과 같고, 원고와 [redacted]공사 사이의 매매대금과 공사대금 사이의 상계 내역은 아래 표 2와 같다.

<표1> 매매대금 납부 약정일 및 원고의 실제 납부내역(단위: 원)

구분	약정일	약정금액	실제 지급일	실제 지급액
계약보증금	2017. 1. 3.	14,425,824,000	2017. 1. 3.	14,425,824,000
1차 할부금	2017. 7. 3.	12,923,420,000	2017. 6. 30.	12,923,420,000
2차 할부금	2018. 1. 3.	12,923,420,000	2017. 6. 30.	1,502,404,000
			2018. 1. 3.	11,421,016,000
3차 할부금	2018. 7. 3.	12,923,420,000	2018. 7. 3.	12,923,420,000
4차 할부금	2019. 1. 3.	12,923,420,000	2018. 12. 12.	12,923,420,000
5차 할부금	2019. 7. 3.	12,923,420,000		12,923,420,000
6차 할부금	2020. 1. 3.	12,923,420,000		12,923,420,000
7차 할부금	2020. 7. 3.	12,923,420,000		12,923,420,000
잔금	2021. 1. 3.	12,923,420,000		12,923,420,000
합계		117,813,184,000		117,813,184,000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2-02-04

<표2> 매매대금과 공사대금 간 상계 내역(단위: 원)

구분	상계일	상계 금액
1	2017. 9. 12.	348,800,000
2	2017. 12. 11.	2,203,200,000
3	2017. 12. 22.	2,736,800,000
4	2018. 5. 14.	2,160,400,000
5	2018. 6. 29.	2,076,800,000
6	2018. 9. 28.	1,557,600,000
7	2018. 12. 12.	15,361,456,000
합계		26,445,056,000

나. 원고의 토지 매매대금 지급

1) 원고는 2017. 1. 3. 원고의 자금으로 계약보증금 14,425,824,000원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지급하였다.

2) 원고는 2017. 6. 29.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로부터 24,344,436,000원을 대출받기로 약정한 후 2017. 6. 30. 그 중 12,923,420,000원(이하 '1차 차입금'이라 한다)을 교부받아 이를 1차 할부금으로 [redacted]공사에 지급하였고, 원고의 자금으로 2차 할부금 중 일부인 1,502,404,000원을 지급하였다.

3) 원고는 2017. 12. 22.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로부터 24,344,436,000원(이하 '2차 차입금'이라 한다)을 대출받기로 약정한 후 2018. 1. 3. 이를 교부받아, 2차 차입금을 이용하여 같은 날 1차 차입금 12,923,420,000원을 C에 상환하고, 2차 할부금의 잔액인 11,421,016,000원을 [redacted]공사에 지급하였다.

4) 원고는 2018. 7. 2. E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로부터 37,267,856,000원(이하 '3차 차입금'이라 한다)을 대출받기로 약정한 후 2018. 7. 3. 이를 교부받아, 3차 차입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2-02-04

금을 이용하여 같은 날 2차 차입금 24,344,436,000원을 D에 상환하고, 3차 할부금 12,923,420,000원을 [redacted] 공사에 지급하였다.

5) 원고는 2018. 12. 10. F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124,000,000,000원(이하 '4차 차입금'이라 한다)을 대출받기로 약정한 후 2018. 12. 12. 이를 교부받아, 4차 차입금을 이용하여 같은 날 3차 차입금 37,267,856,000원을 E에 상환하고, 4차 내지 7차 할부금 및 잔금 합계 64,617,100,000원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지급하였다.

다.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신고·납부

1) 원고는 피고에게, ① 2017. 8. 29. 1차 할부금 12,923,420,000원 및 2차 할부금 중 1,502,404,000원 합계 14,425,824,000원 지급(2017. 6. 30.자)에 따른 연부취득(이하 '1차 연부취득'이라 한다)과 관련한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이하 '취득세 등'이라 한다)를, ② 2017. 11. 13. 1회차 공사대금 348,800,000원 상계(2017. 9. 12.자)에 따른 연부취득(이하 '2차 연부취득'이라 한다)과 관련한 취득세 등을, ③ 2018. 2. 9. 2회차 공사대금 2,203,200,000원 상계(2017. 12. 11.자)에 따른 연부취득(이하 '3차 연부취득'이라 한다)과 관련한 취득세 등을, ④ 2018. 2. 20. 3회차 공사대금 2,736,800,000원 상계(2017. 12. 22.자)에 따른 연부취득(이하 '4차 연부취득'이라 한다)과 관련한 취득세 등을, ⑤ 2018. 7. 13. 4회차 공사대금 2,160,400,000원 상계(2018. 5. 14.자)에 따른 연부취득(이하 '5차 연부취득'이라 한다)과 관련한 취득세 등을, ⑥ 2018. 8. 28. 5회차 공사대금 2,076,800,000원 상계(2018. 6. 29.자) 및 3차 할부금 12,923,420,000원 지급(2018. 7. 3.자)에 따른 연부취득(이하 '6차 연부취득'이라 한다)과 관련한 취득세 등을, ⑦ 2018. 11. 27. 6회차 공사대금 1,557,600,000원 상계(2018. 9. 28.자)에 따른 연부취득(이하 '7차 연부취득'이라 한다)과 관련한 취득세 등을, ⑧ 2019. 2. 11. 4차 내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2-02-04

지 7차 할부금과 잔금 각 12,923,420,000원의 지급 및 7회차 공사대금 15,361,456,000의 상계(각 2018. 12. 12.자)에 따른 연부취득(이하 '8차 연부취득'이라 하고, 위 각 연부취득을 통칭할 때에는 '이 사건 각 연부취득'이라 한다)과 관련한 취득세 등을 각 신고·납부하였다.

2)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각 연부취득과 관련하여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는 별지2 기재와 같이 1차 내지 3차 차입금(이하 이를 통칭하여 '각 특정차입금'이라 한다)에 대한 이자가 포함되어 있었고, 5차 내지 8차 연부취득과 관련하여 납부한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는 위 각 특정차입금에 대한 이자 이외에도 원고가 다른 경로로 차용한 그 밖의 금원(이하 '일반차입금'이라 한다)에 대한 이자가 포함되어 있었다. 원고가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의 금액과 과세표준은 별지3 기재와 같다.

라. 원고의 경정청구 등

1) 원고는 2020. 8. 10. 원고에게 '각 특정차입금 및 일반차입금에 대한 각 이자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연부취득 이전에 이 사건 토지를 연부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비용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별지1 기재와 같이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0. 9. 1. 이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20. 10. 1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그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결정의 통지가 없자 2021. 4. 15.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2-02-04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연부취득 시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이 되는 연부금액은 각 연부금 지급일 이전에 지급원인이 발생하거나 확정된 것으로서 해당 연부금에 상응하는 비율의 물건을 취득하기 위해 지출된 직접비용과 간접비용만을 의미한다.

그런데 각 특정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이 사건 각 연부금 지급 이후에 발생한 비용에 해당할 뿐 이 사건 각 연부금 지급 이전에 해당 연부취득에 소용된 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토지의 각 연부취득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그리고 일반차입금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는 데 사용한 돈이 아니므로, 그 이자도 이 사건 토지 취득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각 특정차입금 및 일반차입금에 대한 이자가 이 사건 토지 취득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아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4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지방세법 제10조 제1항은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되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은 연부취득의 경우에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며, 제20조 제5항은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2-02-04

연부로 취득하는 것은 그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세법에 있어 연부취득의 경우에는 연부계약을 체결한 매수인이 계약상 또는 사실상의 연부금지급일에 연부금을 지급한 금액에 상당하는 비율만큼 당해 재산을 부분취득하는 것으로 하여 그 지급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1987. 6. 23. 선고 85누10 판결, 대법원 1988. 10. 11. 선고 86누703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4년 동안 9회에 걸쳐 매매대금을 분할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은 연부취득에 해당하고, 각 특정차입금에 대한 이자 및 일반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연부취득하기 이전에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비용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납부한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① 1차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그 지급원인이 1차 연부취득 이전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서 1차 연부취득의 금액에 포함시킬 수 없고, 2차 내지 4차 연부취득을 위하여 지급한 비용이 아니라서 2차 내지 4차 연부취득의 금액에도 포함시킬 수 없다.

② 2차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5차, 6차 연부취득을 위하여 지급한 비용이 아니라서 5차, 6차 연부취득의 금액에 포함시킬 수 없다.

③ 3차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7차, 8차 연부취득을 위하여 지급한 비용이 아니라서 7차, 8차 연부취득의 금액에 포함시킬 수 없다.

④ 피고는, 연부계약에 의한 물건 취득의 경우 연부취득 완결 시까지 발생하는 차입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2-02-04

금에 대한 이자를 모두 과세표준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고, 이렇게 해야만 최종 잔금 지급일까지 취득에 소요된 직접, 간접 비용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여타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와 형평이 유지되는 해석론이 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지방세법상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개념이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비용이라고 규정되어 있고, 연부취득에 있어서 계약상 또는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에 지급된 연부금 상당 비율만큼 재산을 취득하는 것으로 하여 그 지급금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삼는다는 것이 법리인 이상, 연부취득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각 연부금 지급일 이전에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 해당 연부금 지급에 상당하는 비율의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만을 포함한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⑤ 이 사건에서 일반차입금에 대한 이자가 이 사건 토지 취득을 위하여 지급된 비용이라는 점은 피고가 증명할 책임이 있는데,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해당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일반차입금에 대한 이자 역시 원고가 납부한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원고는 각 특정차입금을 교부받아 같은 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할부금을 지급하였고, 각 대출약정서에는 이 사건 매매계약상 할부금을 조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출약정을 체결하였고 대출금을 할부금 납부 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함이 명시되어 있는바, 원고가 각 특정차입금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상 할부금 전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일 뿐, 일반차입금이 이 사건 토지의 연부취득에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2-02-04

재판장 판사 [redacted]

판사 [redacted]

판사 [redacted]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2-02-04

별지1

취득세 등 경정청구 내역

(단위: 원)

기존 납부일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합계	비고
2017. 6. 30.	48,150	4,810	30	52,990	
2017. 9. 12.	4,381,920	438,190	2,260	4,822,370	
2017. 12. 11.	2,937,330	293,730	1,520	3,232,580	
2017. 12. 22.	1,336,430	133,640	690	1,470,760	
2018. 5. 14.	16,055,430	1,605,540	8,280	17,669,250	
2018. 6. 29.	3,098,560	309,860	1,600	3,410,020	
2018. 9. 28.	9,648,080	964,800	4,970	10,617,850	
2018. 12. 12.	16,577,280	1,657,730	8,550	18,243,560	
합 계	54,083,180	5,408,300	27,900	59,519,380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2-02-04

별지2

각 특정차입금 이자 내역

(단위: 원)

날짜	구분	금액	비고
2017-06-30	1차 차입금 이자	1,203,825	2017. 6. 30.자 연부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됨
	소계	1,203,825	
2017-07-31	1차 차입금 이자	1,203,825	2017. 9. 12.자 연부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됨
2017-08-31	〃	72,229,526	〃
2017-09-30	〃	36,114,763	〃
	소계	109,548,114	
2017-10-31	1차 차입금이자	37,318,588	2017. 12. 11.자 연부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됨
2017-11-30	〃	36,114,763	〃
	소계	73,433,351	
2017-12-31	1차 차입금 이자	33,410,765	2017. 12. 22.자 연부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됨
	소계	33,410,765	
2018-03-31	2차 차입금 이자	197,289,977	2018. 5. 14.자 연부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됨
2018-04-30	〃	68,031,027	〃
2018-05-31	〃	70,298,727	〃
	소계	335,619,731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2-02-04

2018-06-30	2차 차입금 이자	68,031,027	2018. 7. 3.자 연부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됨
	소계	68,031,027	
2018-07-31	3차 차입금 이자	104,005,836	2018. 9. 28.자 연부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됨
2018-08-31	〃	107,617,315	〃
	소계	211,623,151	
2018-09-30	3차 차입금 이자	104,145,790	2018. 12. 12.자 연부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됨
2018-10-31	〃	107,617,315	〃
2018-11-30	〃	104,145,790	〃
2018-12-12	〃	39,076,104	〃
	소계	354,984,999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2-02-04

별지3

취득세 등 납부 내역

(단위: 원)

구분	내용	과세표준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 특별세
2017. 6. 30.자 연부취득	할부금	14,425,824,000	580,715,550	58,071,550	299,410
	이자 합계액	1,203,825			
	특정차입금 이자	1,203,825			
	PF수수료	90,861,090			
	합 계	14,517,888,915			
2017. 9. 12.자 연부취득	할부금	348,800,000	18,333,920	1,833,390	9,450
	이자 합계액	109,548,114			
	특정차입금 이자	109,548,114			
	합 계	458,348,114			
2017. 12. 11.자 연부취득	할부금	2,203,200,000	91,065,330	9,106,530	46,950
	이자 합계액	73,433,351			
	특정차입금 이자	73,433,351			
	합 계	2,276,633,351			
2017. 12. 22.자 연부취득	할부금	2,736,800,000	110,808,430	11,080,840	57,130
	이자 합계액	33,410,765			
	특정차입금 이자	33,410,765			
	합 계	2,770,210,765			
2018. 5. 14.자 연부취득	할부금	2,160,400,000	102,471,430	10,247,140	52,830
	이자 합계액	401,385,753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2-02-04

	특정차입금 이자	335,619,731			
	일반차입금 이자	65,766,022			
	합 계	2,561,785,753			
2018. 6. 29.자 2018. 7. 3.자 연부취득	할부금	15,000,220,000	606,706,040	60,670,600	312,810
	이자 합계액	77,463,963			
	특정차입금 이자	68,031,027			
	일반차입금 이자	9,432,936			
	PF수수료	89,967,100			
	합 계	15,167,651,063			
2018. 9. 28.자 연부취득	할부금	1,557,600,000	71,952,080	7,195,200	37,090
	이자 합계액	241,202,149			
	특정차입금 이자	211,623,151			
	일반차입금 이자	29,578,998			
	합 계	1,798,802,149			
2018. 12. 12.자 연부취득	할부금	79,978,556,000	3,329,024,360	332,902,430	1,716,410
	이자 합계액	414,431,893			
	특정차입금 이자	354,984,999			
	일반차입금 이자	59,446,894			
	PF수수료	2,832,621,230			
	합 계	83,225,609,123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2-02-04

별지4

관계 법령

■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0. "연부(年賦)"란 매매계약서상 연부계약 형식을 갖추고 일시에 완납할 수 없는 대금을 2년 이상에 걸쳐 일정액씩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 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2-02-04

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1.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2. 할부 또는 연부(年賦)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연체료.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서 제외한다.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⑤ 연부로 취득하는 것(취득가액의 총액이 법 제17조의 적용을 받는 것은 제외한다)은 그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본다. 끝.